

경영위원회 규정

한온시스템 주식회사

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, 기타 일상 경영사항을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인 이사의 이사 직 잔여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명칭은 경영위원회로 하기로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류)

회의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결의사항이 없을 경우, 생략 가능하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제3조1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.

①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

-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
- 사업계획, 사업구조조정 추진
-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
- 급여, 근무제도 및 복리후생 변경에 관한 사항
- 기술 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



- 연간 및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
- 중요설비 교체계획 및 신·증설 계획
- 지점, 공장,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
- 해외지사, 현지법인 등의 설치 이전 및 철수
- 기타 중요 경영 현안

② 재무 등에 관한 사항

- 자기자본 2.5% 미만의 타법인(관계사) 출자, 증자, 출자지분 처분. 단 100억원 (외화 채권의 경우 USD 10Mil) 이하 건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결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- 자기자본 5% 미만의 시설투자
- 자기자본 5% 미만의 단기차입금 증가
- 자기자본 2.5% 미만의 신규 담보제공 또는 신규 채무(지급)보증의 건 (입찰, 계약, 하자,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). 단 100억원 (외화채권의 경우 USD 10Mil) 이하 건, 또는 기간연장 건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결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- 자산총액 2.5% 미만의 유형자산 취득, 처분
- 해외법인 Subordination Agreement (연장)승인
- 여신 신규 약정 / 한도 증액, 연장 / 한도 내 과목한도 변경. 단, 100억원 (외화채권의 경우 USD 10Mil) 이하 건, 또는 기간연장 건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결의를 생략하고 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- 임원배상책임보험 및 Global Insurance Programs 갱신/가입
- 내부거래의 승인(특수관계자와의 거래)
-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 /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- ③ 경영 전반에 걸친 Risk 관리에 대한 사항
 - Risk 관리 운영 실태
 - 의사결정을 요하는 Risk 현안
- ④ 기타 위원장/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⑤ 관련법 및 규정 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.

제 11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·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위원회 결의 내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5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- 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- ②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5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재무총괄임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6 조 (규정의 개폐)
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25. 02. 28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